과천도시공사 시계탑광장 대관 및 운영지침

제정 2026. 10. 15. 지침 제11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과천도시공사가 관리·운영하는 시계탑광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건전한 문화·여가 활동과 시민 참여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시계탑광장의 대관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과천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관리·운영하는 시계탑광장의 대관 및 사용에 적용한다.

② 시계탑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관계 법령, 과천시 조례 또는 공사의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계탑광장"이란 공사가 관리·운영하는 시민회관 인근의 천연 잔디광장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대관"이란 행사, 공연, 전시, 홍보, 시민 참여 활동 등을 위해 시계탑광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자"란 공사의 대관 승인을 받아 시계탑광장을 사용하는 개인, 단체, 법인 또는 기관을 말한다.
4. "부대시설"이란 전기시설, 조명시설, 주차시설, 테이블, 의자 및 그 밖에 시계탑광장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를 말한다.
5. "행사"란 공연, 전시, 홍보, 시민 참여 활동, 체험 행사, 캠페인 및 그 밖에 공사가 승인한 활동을 말한다.

제4조(관리·운영의 원칙) ① 공사는 시계탑광장을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해야 한다.

② 공사는 대관 신청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시계탑광장의 대관은 시민의 공공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

해야 한다.

제2장 대관의 대상 및 신청

제5조(대관의 대상) ① 시계탑광장을 대관할 수 있는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단체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문화・예술 및 공연 관련 행사
3. 체육 및 생활체육 등 체육 진흥 목적의 행사
4. 학교・청소년・복지 관련 목적의 행사
5. 지역사회 발전 및 시민 참여를 위한 공익 목적의 행사
6.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대관은 시계탑광장의 관리 및 시민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관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원칙으로 하며, 사익 또는 영리 목적의 행사는 대관하지 않는다. 다만,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대관 신청) ① 시계탑광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계탑광장 대관신청서(이하 “대관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관을 신청해야 한다.

1. 행사 계획서
2. 안전관리계획서(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대관 신청자는 행사명, 행사 목적, 사용 기간, 예상 참여 인원, 설치시설물, 행사 내용 및 안전관리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③ 공사는 행사 규모 및 내용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일부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대관신청 기간) ① 대관 신청은 사용 예정일 전날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사는 행사 규모, 안전관리 및 행정 절차 등을 고려하여 대관 신청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대규모 행사, 시설물 설치 또는 안전관리 계획이 필요한 행사는 공사가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해야 한다.

제8조(대관승인) ① 공사는 대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행사 내용, 사용 기간, 시설 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대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공사는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행사 내용의 보완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사는 대관을 승인하는 경우 대관 기간, 사용 시간, 사용 구역 및 사용 조건 등을 명시해야 한다.

④ 사용자는 승인받은 내용에 따라 시계탑광장을 사용해야 한다.

제3장 대관 우선순위 및 제한

제9조(대관 우선순위) ① 동일한 기간에 둘 이상의 대관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하여 대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과천시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공사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3. 문화·예술 및 체육 진흥을 위한 행사
4. 학교·청소년·복지 관련 행사
5. 지역사회 발전 및 시민 참여를 위한 행사
6.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대관 신청을 접수한 순서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공사는 공익성, 행사 규모 및 시민 이용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대관 제한)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정치적·종교적 목적의 행사로서 시민 간 갈등 또는 분쟁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상업적 영업이나 물품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시설 또는 설비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5. 소음, 진동 등으로 다른 시설의 이용 또는 시민 통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6. 행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7. 관련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행사인 경우
8.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관을 신청한 경우
9. 과거 대관 시 사용조건 또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 그 밖에 광장의 관리·운영에 적절하지 않다고 공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대관의 제한 및 개방제한)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계탑광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대관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시설의 보수·공사 또는 안전점검이 필요한 경우
2. 과천시 또는 공사의 주요 행사 등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3. 재난·재해 또는 기상악화가 발생한 경우
4. 시설물의 안전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시민의 안전 및 시설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4 장 대관기간 및 사용료

제12조(사용시간) ① 시계탑광장의 사용 시간은 공사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사용자는 승인받은 사용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③ 행사 준비 및 철거에 필요한 시간은 원칙적으로 사용 시간에 포함한다.
④ 공사는 행사 특성 및 시설 관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대관료의 무상사용)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과천시가 주최·주관하는 공익 행사
2. 공사가 주최·주관하는 공익 행사
3.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공익 목적의 행사
4.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라 대관료를 면제받은 경우에도 시설물 훼손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 등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제14조(사용자의 비용부담)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1. 행사에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철거 비용
2. 행사에 필요한 장비 및 부대시설 사용 비용
3. 행사 진행에 필요한 인력 비용

4. 청소 및 폐기물 처리 비용
5. 시설물 훼손에 따른 복구 비용
6. 안전관리 및 행사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비용
7. 그 밖에 행사 개최로 발생하는 비용

제 5 장 사용자의 의무

제15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대관 승인 내용 및 사용조건을 준수할 것
2. 사용 시간을 준수할 것
3.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선량하게 관리할 것
4. 행사 참여자의 안전을 확보할 것
5. 행사장 주변의 시민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6. 소음 및 악취 등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을 것
7. 쓰레기 및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것
8. 행사 종료 후 사용 구역을 원래 상태로 복구할 것
9. 관계 법령 및 행정기관의 안전·위생·소방 등 관련 기준을 준수할 것
10. 그 밖에 공사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16조(주차 및 차량관리) ① 사용자는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차량의 주차 및 이동에 관한 사항을 관리해야 하며, 공사의 주차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 공사는 사전에 협의한 경우 행사 준비, 시설물 설치·철거, 물품 운반 및 장비 반입 등을 위해 출입하는 차량 및 행사 관계자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③ 공익적 행사를 목적으로 시계탑광장을 대관하는 경우에도 행사 참가자 및 방문객의 차량에는 행사 참여를 사유로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하지 않는다. 다만, 「과천시민회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제7조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 대상 차량은 해당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감면한다.

④ 사용자는 행사 참가자 및 방문객에게 주차장 이용방법 및 주차요금 등의 사항을 안내해야 하며, 주차장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원의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7조(대관사항의 변경·취소) ① 사용자는 대관 승인 후 행사 내용, 행사 일

시, 행사장 배치, 예상 인원, 설치 시설물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행사를 취소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시계탑광장 대관 변경·취소신청서(이하 "변경·취소신청서"라 한다)를 사전에 제출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사는 변경 내용이 대관 승인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변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사용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행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사에 알려야 한다.

제18조(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 대관받은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해서는 안 된다.

제 6 장 시설물 설치 및 안전관리

제19조(시설물 설치) ① 사용자가 행사에 필요한 시설물, 장비 또는 구조물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막 및 부스
2. 무대
3. 음향·조명시설
4. 전기시설 및 배선
5. 현수막·배너·입간판 등 홍보시설
6. 테이블·의자 등 행사시설
7. 발전기 등 별도의 전원시설
8. 그 밖에 공사가 지정하는 시설물

③ 사용자는 시설물 설치·철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④ 사용자는 설치된 시설물을 행사 종료 즉시 철거하고 사용 구역을 원상복구해야 한다.

제20조(시설물 설치기준) ① 사용자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통행, 소방·피난 동선, 차량 통행 및 시설물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 공사는 안전 또는 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의 설치를 제한하거나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안전관리) ① 사용자는 행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

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공사는 행사 규모, 예상 참여 인원 및 행사 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에게 안전관리계획서, 행사보험 가입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행사의 규모가 크거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행사의 경우 안전관리요원 등을 배치해야 한다.

④ 행사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 다만 공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2조(전기 및 화재안전) ① 사용자는 행사에 필요한 전기시설을 설치·사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전기시설, 발전기,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공사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자에게 안전점검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시설물이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장 홍보물 및 영업행위

제23조(홍보물 등의 설치) ① 사용자가 행사와 관련하여 현수막, 배너, 입간판 및 그 밖의 홍보물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홍보물은 공사가 정한 장소와 방법으로 설치해야 한다.

③ 사용자는 행사 종료 후 홍보물을 즉시 철거해야 한다.

④ 홍보물의 설치·철거 과정에서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 사용자는 원상복구해야 한다.

제24조(영업행위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시계탑광장에서 물품 판매, 음식물 판매, 모금, 홍보 및 그 밖의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공사는 행사 목적 및 시민 편의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영업행위를 제한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제 8 장 대관 승인 취소 및 원상복구

제25조(대관 승인 취소 등)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1. 이 지침 또는 대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승인받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관 승인을 받은 경우
4. 공사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5. 공사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6. 시민의 안전 또는 시설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8. 천재지변, 재난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9. 그 밖에 공사가 대관을 계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6조(사용중지 및 퇴거) ① 공사는 사용자가 대관 조건을 위반하거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사용 중지 또는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조치에 즉시 따라야 한다.

제27조(원상복구) ① 사용자는 대관 기간 종료 후 사용한 시설과 구역을 원상복구해야 한다.

②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경우 공사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원상복구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 9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28조(변상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계탑광장의 시설 또는 비품을 훼손·분실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해야 한다.

② 행사 참가자 또는 관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제29조(기록 및 관리) 공사는 시계탑광장의 대관 신청, 대관 승인, 대관료 납부, 사용 내역 및 사고·민원 발생 사항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30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시계탑광장 대관에 관하여 법령, 과천시 조례 또는 공사의 다른 규정에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31조(세부사항)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6. 10. 15. 지침 제111호)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제6조제1항 관련)

시계탑광장 대관신청서

단체(개인) 정보	단 체 명 (개 인 명)		단체(개인) 주 소	
	대표자명		이메일 주소	
	담당자명		전화번호 (휴대번호)	
대 관 기 간	대 관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오전, 오후, 저녁) : ~ : (일간)		
	비 고	※ 설치 및 연습, 공연(행사), 철거 시간은 대관시간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관 주요 내용	공 연 (행 사 명)			
	주 요 내 용			
	총 인 원 수			
	주 차 차 량 현 황	● 행사준비차량: 대 ● 무료・감면 신청 차량번호:		
	비 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대관 및 기타 업무 진행 등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주소, 연락처, 차량번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대관 관련 업무처리 및 기록물 보존기간까지**
4.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대관 신청이 어려우므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동의함 □ 미동의함

위와 같이 시계탑광장의 대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과천도시공사사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제17조제1항 관련)

시계탑광장 대관 변경·취소신청서

단체(개인) 정보	단 체 명 (개 인 명)		단체(개인) 주 소	
	대표자명		이메일 주소	
	담당자명		전화번호 (휴대번호)	
대관 신청 사항	공 연 (행 사 명)			
	대 관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오전, 오후, 저녁) : ~ : (일간)		
	비 고			
변경 (취소) 사항	변 경 (취 소) 사 항			
	변 경 (취 소) 사 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대관 및 기타 업무 진행 등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주소,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대관 변경·취소 신청 업무처리 및 기록물 보존기간까지**
4.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대관 신청 및 변동이 불가합니다.

□ 동의함 □ 미동의함

위와 같이 시계탑광장의 대관을 (변경·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과천도시공사사장 귀하